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6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20.

발의자 : 이수진 · 송옥주 · 김준혁

이원택 · 김문수 · 추미애

민병덕 · 장철민 · 김현정

최기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(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)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호머목).

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머목2) 중 “20만원”을 “30만원(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)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·보육 관련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1. · 2. (생 략) 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. ~ 러. (생 략) 머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	제12조(비과세소득)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가. ~ 러. (현행과 같음) 머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) (생 략) 2)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 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 (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)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
	-----3

<p><u>0만원 이내의 금액</u></p> <p>버. ~ 쳐. (생 략) 4. · 5. (생 략)</p>	<p><u>0만원(제50조에 따른 기 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 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)-----</u></p> <p>버. ~ 쳐. (현행과 같음) 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